

녹십자 이사회규정

제정 2014.10.20
전면 개정 2017.02.02
개정 2021.01.01
개정 2022.05.19
개정 2024.03.28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주) 제2항의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제14조에서 규정하였음.

제2장 구 성

제4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하며, 그 임기는 1년(선임 후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)으로 한다. <개정 2022.05.19>

②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

대행한다. 단,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일 경우 선임(先任) 순,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1. 사외이사
2. 대표이사
3. 1호 및 2호 이외 이사

<개정 2022.05.19>

제5조의2(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) 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.

<본조신설 2021.1.1>

제3장 회 의

제6조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2.05.19>

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3.28>

제8조(소집절차)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

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 ① 이사회는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<개정 2022.05.19>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(특별한 이해관계 등)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(연결 자기자본, 매출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). <개정 2021.1.1>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4) 회사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5) 중요한 CI의 제정 및 변경
- (6) 이사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(단,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)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(단, 감사위원회 결의는 제외)
- (10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.개정 및 폐지 등
- (1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
- (13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4)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결 자산총액, 연결 부채총액, 연결 매출액 5%이상의 영업양수도
- (15) ESG 관련 주요 사항 <신설 2022.05.19>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결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승인
- (2) 신주의 발행
- (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4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- (5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6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7) 금이천억원 이하의 전환사채의 발행
- (8) 금이천억원 이하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9)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발행
- (10) 연결 자기자본 10% 이상의 장·단기 차입
- (11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
- (12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3) 자기주식의 이익 소각
- (14) 중간배당
- (15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처분
- (16) 주식 분할 또는 병합
- (17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파생상품 거래

4. 투자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- (1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신규사업
- (2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신제품 개발 및 개발과제 선정
- (3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특허권 양수도 및 기술도입, 이전, 제휴 (License In or Out)
- (4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공장 및 연구소 신·증축
- (5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유·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
- (6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의 비경상적 경비지출

(7) 10억원 이상의 기부금(동일 대상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누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). 단, 태풍, 홍수, 화재, 지진 등 긴급 구호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1>

5. 영업 및 생산에 관한 사항

- (1) 연결 매출액 5% 이상의 판매계약 및 거래중단
- (2) 연결 매출액 5% 이상의 제·상품 폐기 결정
- (3) 연결 매출액 5% 이상의 생산 활동 중단

6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,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
7. 기타

- (1) 명의개서대리인
- (2) 기타 결의 사항 (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)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<개정 2024.03.28>
2.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
3.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 <개정 2024.03.28>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5.19>

1. 경영위원회
2. 감사위원회 <신설 2024.03.28>
3.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<신설 2024.03.28>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<신설 2022.05.19>

② 각 위원회의 목적, 권한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③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)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
2.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 또는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
3.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총액의 범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
 - (1) 사채의 발행 (제10조 제1항 제3호의 제(6)목 내지 제(9)목)
 - (2) 차입 및 보증 (제10조 제1항 제3호의 제(10)목 및 제(11)목)
 - (3)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(제10조 제1항 제6호의 제(1)목)
4. 차입 및 보증의 연장
5. 이사회에서 승인한 금액에 대하여 15% 미만의 증액에 대한 결정 및 집행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범위 내)
6. 임직원에 대한 권한의 재위임

② 대표이사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이사회 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<본조신설 2021.1.1>

제11조의3(긴급 집행) ① 경영 목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즉시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,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전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추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대내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.

<본조신설 2021.1.1>

제12조 삭제 <2024.03.28>

제13조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의사록)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6조(간사)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7조(운영) 의장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이사회는 이사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식·음료, 선물 제공 및 친목 도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7년 02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